

제299회 임시회

2011. 4. 21.(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4. 21.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4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4월 7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4월 13일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가. 제안이유
 -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

로 지정하며,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순화 및 변경(안 제명, 안 제2조, 안 제33조제1항제2호)
 - 제명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
 -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제4항)
 -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안 제17조)
 - 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국장
 -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과장
 - 기금출납원 :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안 제27조)
 -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지원 사항 포함
 -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지원으로 하고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성장촉진지역 공장 운영비지원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지원
 - 3년간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고,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조례안 중 제27조제2항 중 설비투자 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 제30조의2를 신설한 이유와 충청북도의 재정부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2011년”을 “2016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제27조제1항 중 “이전하는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중설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장 운영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국내·외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제33조제1항제2호 중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한다.

별표1 대상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을 “ “성장촉진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 및 서비스업”이라 함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p> <p>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란 ----- 2. -----이란 ----- 3. -----란 ----- 4. -----이란 ----- 5. -----이란 ----- 6. -----이란 -----

현 행	개 정 안
<p>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p>	<p>7. ----<u>란</u>----- ----- ----- ----- ----- ----- -----</p>
<p>8.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p>	<p>8. ----<u>란</u>----- ----- ----- -----</p>
<p>9.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p>	<p>9. ----<u>란</u>----- ----- -----</p>
<p>10.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p>	<p>10. ----<u>란</u>----- ----- ----- -----</p>
<p>11.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p>	<p>11. ----<u>이란</u>----- ----- ----- -----</p>
<p>12. “투자기업과 서비스업”이라 함은 도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과 서비스업을 말한다.</p>	<p>12. ----<u>이란</u>----- ----- ----- -----</p>
<p>13.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p>	<p>13. ----<u>이란</u>----- ----- ----- ----- ----- -----</p>

현행	개정안
<p>1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다. (생략)</p> <p>15.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16.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17.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8. “낙후지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p>	<p>14. -----이런 ----- ----- ----- ----- ----- ----- ----- -----</p> <p>가.~다. (현행과 같음)</p> <p>15. -----이런 ----- ----- ----- ----- ----- ----- ----- -----</p> <p>16. -----이런 ----- ----- ----- ----- ----- ----- ----- -----</p> <p>17. -----이런 ----- ----- ----- ----- ----- ----- ----- -----</p> <p>18.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제7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투자진흥기금) ①~③(생략)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투자진흥기금) ①~③(현행과 같음) ④ ----- 2016년 ----- ----- -----.</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관련 과장이 된다.</p> <p>② (생략)</p>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 분입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생략)</p>	<p>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중소 기업-----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② ----- -----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생략)</p> <p>1. (생략)</p> <p>2. 도내 낙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p>[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61 1355 794 1814">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p>제30조의2(공장운영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p> <p>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성장촉진지역</u>-----</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794 1355 1431 1814">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u>성장촉진지역</u>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u>성장촉진지역</u>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구분	대상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구분	대상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u>성장촉진지역</u>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관련법령 발취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오폐수처리비, 물류비 50%범위에서 3년간 보조(안 제30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난 5년간('06~'10) 지원실적을 기초로 산출
-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도내 투자기업 지원 업체수 기준으로 산출
- 오폐수처리비는 1일 배출 200톤, 처리비용 3,000원/톤을 기준으로 산출
- 연간매출액 100억인 업체, 매출액 대비 10%의 물류비 기준으로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업체 운영비(오폐수처리비, 물류비) 산출
 - 오폐수처리비(1개 업체 발생 오폐수 처리비용- 3년)
 - $200\text{톤} \times 3,000\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3\text{년} = 657\text{백만원}$
 - **보조금 지원 한도** : 657백만원의 50%범위내인 최고 **300백만원**
 - 물류비(연간 매출액 100억원인 업체의 물류비용 - 3년)
 - $10,000\text{백만원} \times 10\% \times 3\text{년} = 3,000\text{백만원}$
 - **보조금 지원 한도** : 3,000백만원의 50%범위내인 최고 **1,500백만원**
- 보조금 소요액 산출
 - 성장촉진지역 보조금 지원예상(1년) 업체수 : 1개 업체
 - '06~'10년(5년간) 보조금 지원 : 14개 업체(년 : 3업체정도- 일반지역 투자업체)
 - 성장촉진지역은 연간 1개 업체 지원 예상
 - **보조금 소요액(1년) : 60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

4.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담당 정 효 진 (220-331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연도					합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 계		600,000	1,2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7,200,000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도 비	300,000	600,000	900,000	900,000	900,000	3,600,000
	군 비	300,000	600,000	900,000	900,000	900,000	3,60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군비 일반회계 예산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담당 정 효 진 (220-3311)